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865호
- 다. 제출일자 : 2020. 08.27
- 라. 회부일자 : 2020. 10.28

2. 제 안 사 유

- 가. 2012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나. 급수업종을 4개 → 3개로 간소화하고, 3단계의 누진체계를 단일요금 체계로 개편하여 요금부과의 공평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급수업종 중 공공시설, 학교 등에 적용하는 공공용을 2022년부터 일반용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도록 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나. 상수도 사용요금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2021년, 2022년, 2023년
별로 단위(m^3)별 요금단가를 조정함(안 별표 2).

- 1) 가정용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 2) 욕탕용과 일반용은 누진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되, 2022년
부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함.
- 3) 공공용은 누진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여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일반용 요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사 용 요 금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가정용	0~30이하	360
	30초과~50이하	550
	50초과	790
욕탕용	0~500이하	360
	500초과~2,000이하	420
	2,000초과	560
공공용	0~50이하	570
	50초과~300이하	730
	300초과	830
일반용	0~50이하	800
	50초과~300이하	950
	300초과	1,260



사 용 요 금(원/ m^3)				
구분 업종	사용구분 (m^3)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욕탕용	0~500	490	570	620
	500 초과	51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 초과	1,040		
일반용	0~300	1,020	1,160	1,270
	300 초과	1,150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여건 개선 및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를 위해 지난 8년간 동결된 수도요금을 현실화(인상, 업종 통합, 누진 요금 부과방식 개선)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서울시는 2012년 수도요금 인상 이후 유수율 향상¹⁾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지난 8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지만, 지속적인 생산원가²⁾ 상승에 따라 결국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92.0%에서 2019년 80.1%까지 하락하여 행정안전부 권고 비율인 90%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수돗물 판매단가는 566원/ m^3 으로 타 광역시³⁾ 평균의 80%, 특히 가정용은 7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

<수도요금 현실화율>

(단위: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원가(/ m^3)	618	639	673	697	702	713	707
판매단가(/ m^3)	569	569	568	569	566	566	566
요금 현실화율	92.0	89.1	84.5	81.7	80.7	79.4	80.1

1) 유수율 향상 현황 : '12년 94.5% → '20년 96.1%

2)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자본비용, 감가상각비, 수선교체비, 경상이전, 운영비 등

3) ('19년 기준 톤당) 부산시 854원, 대구시 633원, 인천시 625원, 대전시 547원, 광주시 655원, 울산시 849원(대전의 경우 평균 판매단가는 서울시보다 낮지만, 가정용 판매단가는 서울시보다 높음)

<타 광역시와 수도요금 수준 비교>

(단위: 원, %)

구 분	생산원가 (/m³)	판매단가 (/m³)	요금현실화율	업종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옥탕용
서울시	707	566	80.1	403	808	988	477
광역시 평균	802	694	87.1	576	1,006		872

- 2019년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수입 규모는 총 8,666억원⁴⁾으로 이중 사용료수익이 89.4%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요금 인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향후 재정수입 규모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급수 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량 감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완료⁵⁾에 따라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

반면, 상수도시설물 노후화⁶⁾에 따른 노후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하절기 수돗물 수요 급증에 따른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등의 필요에 따라 중기 투자수요는 재정수입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기 투자수요 및 재정수입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투자수요	51,599	9,891	11,071	11,362	9,731	9,544
재정수입	42,051	8,365	8,392	8,418	8,436	8,440

4) 사용료수익 89.4%, 급·배수공사수익 2.8%, 시설분담금수입 3.3%, 타회계전입금 3.3%, 기타 1.3%임

5) 급수인구 감소에 따른 사용료수익 감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급·배수공사 수익 및 시설분담금 수입 감소

6) 상수도시설물 노후화 지수($\frac{\text{사용연수}}{\text{내구연한}}$) = 평균 82.1%(기전설비 88.9%, 구조물 82.6%, 상수도관 74.7%)

2)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등 투자수요 관련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스마트 상수도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9,784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2021년 ~ 2025년 상수도시설 투자계획>

(단위: 억원)

분야	사업명	사업비	비중
계		9,784	100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①	사용연수 경과 노후 시설물 등 지속적 정비	4,507	46.1
	생산시설 확충 및 취수원 다변화 추진	1,676	17.1
	친환경 무연계량기 도입 및 친환경 상수도 운영시스템 구축	263	2.7
	소계	6,446	65.9
스마트 상수도 구축 ②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돗물 관리	68	0.7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 운영	22	0.2
	Online 원격검침 대폭 확대	2,340	23.9
	소계	2,430	24.8
상수도 전문성 강화 ③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전문성 향상 추진	25	0.3
	민간기업의 역량 배양으로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15	0.2
	소계	40	0.4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④	상수도관망 상시 모니터링(13,504km)으로 관청소 및 교체 추진	153	1.6
	상수도관 주기적 물청소 강화 및 주택내 노후 급수관 교체	415	4.2
	음용율 향상	300	3.1
	소계	868	8.9

- 세부적으로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는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률⁷⁾이 1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있고 상수도 시설의 노후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는 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단위 : 천m³/일)

구분	총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7) 2020년(1월~9월)가동률(%)	96.8	92.0	92.2	76.5	111.1	101.5	108.8

또한, 수돗물 수질사고의 상당 부분이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상수도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만, 스마트 상수도 구축의 경우 향후 5년간 260,500수전에 대해 온라인 원격검침을 도입하는데 있어 2,3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수전당 평균 설치비용을 88만원⁸⁾ 수준으로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고 2021년도 설치물량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총 102억원, 국비(51억원) 매칭)되어 있음.

따라서 현 설치단가⁹⁾(평균 19만원/수전)에 맞추고 내년도 기 반영분을 재조정하여 투자재원을 산출해야 할 것이며, 원론적으로 원격검침의 기술적 완성도 및 통신방식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다면 안정화가 기대되는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임.

<원격검침서비스 구축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투자금액	2,340					
설치개소	260,500(전체)	53,500	53,500	53,500	50,000	50,000
	250,000(신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500(검침장애)	3,500	3,500	3,500		

8) 당초 설치단가 : 883,000원

- 대형 검침장애 수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과다 계산

9) 현 설치단가(2021년 예산안 편성 기준) : 190,000원

- 검침단말기 115,000원, 디지털계량기 75,000원

3) 수도요금 인상안 관련(안 별표2)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수도요금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며,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업종을 통합하고 3단계 누진단계를 단일 요금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노후 상수도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재정수입 확보,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실효성 및 업무효율성 확보 등을 고려한다면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상수도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분석 용역¹⁰⁾」을 실시하였고 동 용역 결과에서는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수도요금 현실화를 하락과 향후 재정수입을 상회하는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수도요금 인상, 실효성이 낮은 3단계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음.

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의 침체 국면에서 수도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인상폭이나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세부적으로 안 별표2의 업종별, 사용량 구간별 사용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을(98.1%) 차지하는 30 m^3 이하 구간의 사용요금은 2021년의 경우 360원에서 430원으로 70원(19.4%) 인상되고 이를 4인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해보면 월평균 1,68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수준임.

10) (주)한국수도경영연구소('19.10.24 ~ '19.12.2)

<가구당 수도요금 인상안>

(단위: 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인상률	연평균 인상률
2인 가구 12톤(4,320)	5,160 (840)	6,000 (840)	6,960 (960)	61.1	20.4
4인 가구 24톤(8,640)	10,320 (1,680)	12,000 (1,680)	13,920 (1,920)	61.1	20.4

또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에 해당되는 욕탕용(500m³ 이하)과 일반용(50m³ 이하)의 경우 인상률이 각각 36.1%(130원 인상), 27.5%(220원 인상)로 평균 인상률 11.7%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누진단계 축소(폐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용량 최저(1단계) 구간의 인상폭을 크게 설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공공용의 경우 2022년 일반용과의 업종통폐합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크게 설정함에 따라 50m³ 이하 구간의 경우 인상률이 무려 61.4%(570원 → 920원)에 달하고 있음.

사 용 요 금(원/m ³)			비율(%)	
구분	사용구분 (m ³)		전체	업종별
			100	
가정용	0~30이하	360	85.1	95.3
	30초과~50이하	550		4.2
	50초과	790		0.5
욕탕용	0~500이하	360	0.0	21.3
	500초과~2,000이하	420		42.4
	2,000초과	560		36.5
공공용	0~50이하	570	3.5	54.3
	50초과~300이하	730		26.7
	300초과	830		18.9
일반용	0~50이하	800	11.4	75.2
	50초과~300이하	950		21.0
	300초과	1,260		3.8

<현행>



사 용 요 금(원/m ³)				
구분	사용구분 (m ³)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욕탕용	0~500이하	490	570	620
	500 초과	510		
공공용	0~300이하	920	폐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 초과	1,040		
일반용	0~300이하	1,020	1,160	1,270
	300초과	1,150		

<개정안>

4) 종합의견

- 수도요금 인상(업종통합,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 포함)은 노후 상수도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재정수입 확보,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실효성 및 업무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수도요금 인상안의 기초가 되는 중기투자 계획 중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되고 본예산에 기반영(2021년도분) 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나아가 도입 시기를 재조정하여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제안된 수도요금 인상 규모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시기까지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한편, 수도요금 인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행정안전부 권고비율 수준으로 개선되겠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후 다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임.